

항공기상 기술동향(제10호)

2018. 12. 27.(목)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박예지

□ (보도) 국토교통부, 한·중 복선 항로 개통

- 국토교통부는 12월 6일 00시부터 중국, 몽골, 중동, 유럽행 항공편이 이용하는 한중항로(G597/A326) 1,700km 구간이 복선으로 운영된다고 밝힘
- 이번 항로체계 개선으로 연 15만대(하루 410편)의 해당 노선 이용 항공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, 특히 1시간 이상의 장기 지연이 빈번한 유럽행의 지연율이 12%(2,188편)에서 7%대(1,276여편)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
- ※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'18.12.4.) "6일부터 한·중 복선 항로 개통... 중국·유럽행 하늘길 숨통 틔운다"

□ (보도) 국토교통부, 항공레저 사업 규제개선으로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

-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 사업 규제개선에 관한 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국무회의('18.12.24.)를 통과했다고 밝힘
- (개정안의 주요내용)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, 소형항공운송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완화 등
- 이러한 항공레저 관련 진입규제 완화로 사업 진출이 쉬워지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지원 효과도 기대됨
- ※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'18.12.21.) "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춰"

□ (보도) 국토교통부,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

- 국토교통부는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(CATegory) 운영 최고 등급으로 상향했다고 밝힘
- 김포공항('18.11.8.) : CAT-IIIa 시정 175m → CAT-IIIb 시정 75m
- 김해공항('18.12.6.) : CAT-I 시정 550m → CAT-II 시정 350m
- ※ 청주·대구공항은 2012년, 제주공항은 2014년부터 운영등급을 상향하여 운영 중임
- 앞으로 날씨에 의한 결항('17년 기준 1,420편)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150편 감소(10.5%)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10년간 약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
- ※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'18.12.5.) "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지연율, 대폭 개선된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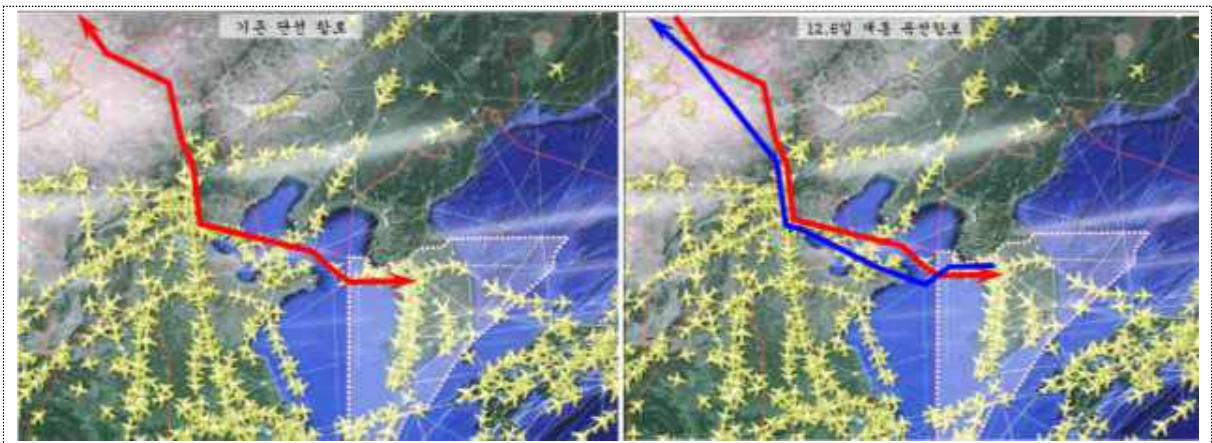
□ 국제기구 동향

- 세계기상기구(WMO), 기술규정(WMO-제49호) 제2권(국제항행용 기상서비스) 발행
- ※ 출처 : WMO 항공기상프로그램(AeMP) 홈페이지('18.12.13.)

□ 국토교통부, 한·중 복선 항로 개통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'18.12.4.) "6일부터 한·중 복선 항로 개통... 중국·유럽행 하늘길 숨통 틔운다"

- 국토교통부는 6일 00시부터 중국, 몽골 중동, 유럽행 항공편이 이용하는 한중 항로(G597/A326) 1,700km 구간을 복선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에 따라 그동안 상습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던 북경하늘을 통과하는 항로가 복선으로 분리되어 항로혼잡과 국내공항 출발편 지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



- 국토교통부는 중국 하늘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항로비행을 위한 대기, 지연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고 교통밀집시간대(11-15시)에는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운항이 빈번히 발생해 왔으나,
 - 이번 항로체계 개선으로 연 15만대(하루 410편)의 해당 노선 이용 항공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, 특히 1시간 이상의 장기지연이 빈번한 유럽행의 지연율이 12%(2,188편)에서 7%대(1,276여편)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 - * 국제선은 이륙예성시간에서 1시간 초과 시 지연으로 간주되는데 한중 노선은 항로혼잡으로 운항편의 12%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매우 혼잡한 노선임
- 이를 위해 양국 항공당국은 12월 5일 중국 대련에서 '한중 항로개선 워킹그룹 2차 회의'를 개최하고 12월 6일 복선 항로 운영에 최종 합의하였다
 - 그동안 중국 내 한 항로를 양방향으로 이용해야 했던 인천 행/발 항공기들이 6일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는 기존 항로(A326-G597-Y644)를 이용하고, 우리나라에서 중국, 몽골, 중동, 유럽 등으로 나가는 항공기는 신설 항로(Y697-A591)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하늘길이 넓어지게 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, 항공레저 사업 규제개선으로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18.12.21.) "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춰"

-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*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 항공운송사업 규제 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

* 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18.12.24.)

-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[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]

-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 사업,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 (4천 5백만 원→3천만 원)하고,
-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·조정

<항공레저스포츠 대여서비스 업종 자본금 개정내역>

. 법인: (현행) 3억 원 이상	→	(개정) 2.5억 원 이상
. 개인: (현행) 4.5억 원 이상	→	(개정) 3.75억 원 이상

[소형항공운송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완화]

-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*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, 주간 시계비행**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.

* 계기 비행(Instrument Flight, 計器飛行) 어둠·안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항로를 항공기의 자세·고도(高度)·위치 및 비행 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

** 시계 비행(Visual Flight, 視界飛行) 조종사 자신이 시각으로 지형지물, 지도 등을 참조하여 비행하는 방식

-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,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.

- 이번 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이르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,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18.12.5.) "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지연율, 대폭 개선된다"

- 국토교통부는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(CATegory) 운영 최고 등급으로 상향했다고 밝힘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(CATegory)을 최고등급(CAT-IIIa : 시정 175m → IIIb : 시정 75m)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데 이어,
 - 오는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(CAT-I : 시정 550m → II : 시정 350m)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공항활주로운영등급(CAT) 이란?

○ 안개, 폭우, 눈 등 기상에 의해 조종사가 활주로를 보이지 않아도 자동(Auto pilot)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등급으로 구분(Auto pilot) 한 것




[공항활주로운영등급 (CAT-I) 상황] [세계최고 공항활주로운영등급 (CAT- IIIb) 상황]

- 공항 활주로 운영등급(CAT) 현황

공 항	방 향	정밀등급 상향		공 항	방 향	정밀등급 상향	
		기존	상향			기존	상향
인 천	전 방향	CAT-IIIb	-	무 안	1	CAT-I	-
김 포	14R	CAT-IIIa	→ IIIb (완료)	무 안	19	CAT-I	-
	32L	CAT-I	-		양 양	33	CAT-I
김 해	36L	CAT-I	→ II (완료)	양 양		15	선회접근
	18R	선회접근	-		제 주	17	CAT-I
제 주	07	CAT-I	→ II (완료)	제 주		35	CAT-I
	24	CAT-I	-		대 구	10	PAR
대 구	31L	CAT-I	-	대 구		28	비정밀
	13R	비정밀	→ I (완료)		광 주	24R	CAT-I
광 주	04R	CAT-I	-	사 천		06L	비정밀
	22L	비정밀	-		청 주	03	PAR
청 주	24R	CAT-I	-	원 주		21	PAR
	06L	CAT-I	→ I (완료)		울 산		
울 산	36	CAT-I	-				
	18	비정밀	-				

※ 활주로 정밀운영등급(CAT) : 착륙시정치(활주로그시거리 RVR) 구분

-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성능에 따라 구분되며, CAT-I : 550m ↑, CAT-II : 300m ↑, CAT-III(a) : 175m ↑, CAT-III(b) : 50m ↑